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18호 2021. 5. 7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**고 시**

- 남원시 고시 제2021-69호 남원 도시관리계획(학교:남원초등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---- 1
- 남원시 고시 제2021-70호 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---- 2

**공 고**

- 남원시 공고 제2021-1017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--- 17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1-69호

## 남원 도시관리계획(학교:남원초등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학교:남원초등학교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☎063-620-645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21년 5월 7일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학교:남원초등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 
가. 도시관리계획(학교:남원초등학교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3	학교	초등학교 (남원초등학교)	남원시 금동 343-1	29,442	(감)2,356	27,086	전라북도고시 제1980-238호 (1980.11.19.)	-

- 나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	비고
3	학교	◦남원초등학교 면적변경 : 29,442㎡ → 27,086㎡ (감 2,356㎡)	◦인주변 주택지와 교육시설 등의 근접성을 고려 접근성이 우수한 남원 초등학교 유희부지에 남원시 서부권(금동, 노암동, 조산동 일원)의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형 공공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학교시설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자 함	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: “실 음생략”

남원시 고시 제2021-70호

## 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(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관련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  
2021년 5월 7일

### 1.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면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획관리지역	347,354	-	347,354	100.0	

### 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19	지리산 웰빙허브 산업특구 지구단위 계획구역	복합형	소 계	-	345,713	-	345,713
				특 정 형	운봉읍 용산리 717-8번지 일원	41,112	-	41,112
				관광휴양형	운봉읍 용산리 266-14번지 일원	304,601	-	304,601

### 3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# 가.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##### 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# ☑ 교통시설 : 도로(변경없음)

○ 도로 총괄표

구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<sup>2</sup> )									
합계	16	4,498	39,999	3	528	5,665	3	386	6,061	10	3,584	28,273
중로	7	1,426	18,810	-	-	-	3	386	6,061	4	1,040	12,749
소로	9	3,072	21,189	3	528	5,665	-	-	-	6	2,544	15,524

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 (구간내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기점	종점				
기정	중로	2	341	15	국지 도로	157	중로2-105 용산리 771-1도	소로3-605 용산리 377-5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07. 01.05.	
기정	중로	2	342	18	국지 도로	98	중로3-343 용산리 265-1	중로3-341 용산리 265-1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07. 01.5.	
기정	중로	2	105	15	보조 간선	1,164 (131)	중로2-101 동천리 419-3	허브밸리입구 용산리 771-1	일반 도로	운봉 초교	1977. 12.30.	
기정	중로	3	341	12	국지 도로	82	중로3-342 용산리 718-1도	중로2-342 용산리 265-1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07. 01.05.	
기정	중로	3	342	12	국지 도로	323	중로2-341 용산리 682-3구	중로3-344 용산리 265-1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07. 01.05.	
기정	중로	3	343	12	국지 도로	115	중로2-341 용산리 265-1도	중로2-342 용산리 265-1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07. 01.05.	
기정	중로	3	344	12	국지 도로	520	중로3-341 용산리 265-1도	구역계 용산리 446-1목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07. 01.05.	

## 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-계속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 (구간내)	위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기점	종점				
기정	소로	1	601	10	특수 도로	81	중로3-342 용산리 265-1도	중로2-342 용산리 265-1도	보행자 전용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07. 01.05.	
기정	소로	1	602	10	국지 도로	72	중로3-344 용산리 265-1도	소로3-605 용산리 265-1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기정	소로	1	603	10	국지 도로	375	중로3-344 용산리 446-1목	소로3-609 용산리 763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기정	소로	3	605	6	국지 도로	1,628	중로3-341 용산리 265-1도	중로2-341 용산리 265-1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기정	소로	3	606	6	국지 도로	187	소로3-605 용산리 산8입	구역경계 용산리 산10입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기정	소로	3	607	4	특수 도로	156	소로3-605 용산리 442-3목	소로3-605 용산리 442-4입	보행자 전용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기정	소로	3	608	4	특수 도로	123	소로3-605 용산리 442-3목	소로3-605 용산리 442-4입	보행자 전용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기정	소로	3	609	6	특수 도로	310	소로2-601 용산리 721-10도	소로1-603 용산리 717-12도	보행자 전용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기정	소로	3	610	6	국지 도로	140	소로2-601 용산리 757-2도	소로1-603 용산리 757-2도	일반 도로	지구단위 계획구역	2013. 12.24.	

**☑ 주차장(변경없음)**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소계				32,562	-	32,562		
기정	341	주차장	운봉읍 용산리 718답 일원	3,034	-	3,034	2007.01.05.	
기정	342	주차장	운봉읍 용산리 266-1차 일원	4,053	-	4,053	2007.01.05.	
기정	343	주차장	운봉읍 용산리 268-6차 일원	10,263	-	10,263	2007.01.05.	
기정	344	주차장	운봉읍 용산리 724-4차 일원	15,212	-	15,212	2007.01.05.	

**☑ 방재시설(변경없음)**

○ 우수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6	우수지	저류시설	운봉읍 용산리 714-1답 일원	2,200	-	2,200	2013. 12. 24.	

**☑ 공간시설 : 녹지(변경없음)**

○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m <sup>2</sup> 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소계					18,898	-	18,898		
기정	341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17-5답 일원	692	-	692	2007.01.05.	
기정	346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	1,449	-	1,449	2007.01.05.	
기정	347	녹지	경관녹지	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	3,858	-	3,858	2009.07.14.	
기정	348	녹지	경관녹지	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	2,957	-	2,957	2009.07.14.	
기정	349	녹지	경관녹지	운봉읍 용산리 산6-2암 일원	4,361	-	4,361	2009.07.14.	
기정	350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14-8공 일원	2,082	-	2,082	2013.12.24.	
기정	352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14-8공 일원	1,034	-	1,034	2013.12.24.	
기정	353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271-2차 일원	1,807	-	1,807	2013.12.24.	
기정	354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268-6차 일원	658	-	658	2013.12.24.	

## 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도면 번호	가구번호	획지				비고
	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	210,942	-	210,942	
A	소계		37,822	-	37,822	
	A-1	용산리 266-14	15,427	감) 1,318	14,109	허브복합토피아관
	A-2	용산리 268-12	15,431	증) 1,318	16,749	아로마테라피관
	A-3	용산리 446-3	4,437	-	4,437	관리동
	A-4	용산리 423-10	1,613	-	1,613	미니동물원
	A-5	용산리 423-10	914	-	914	라이더관리소
D	소계		110,346	감) 1,508	108,838	
	D-1	용산리 446-20	3,366	-	3,366	녹지
	D-2	용산리 393	1,273	-	1,273	녹지
	D-3	용산리 423-1	1,533	-	1,533	녹지
	D-4	용산리 266-2	3,752	-	3,752	녹지
	D-5	용산리 442-4	25,237	-	25,237	녹지(토피어리원)
	D-6	용산리 442-3	16,497	감) 2,510	13,987	녹지(미로원)
	D-7	용산리 442-3	12,145	-	12,145	녹지(향기원)
	D-8	용산리 산10	17,198	증) 1,002	18,200	녹지(철쭉원)
	D-9	용산리 714-1	8,921	-	8,921	허브정원1
	D-10	용산리 717-1	14,263	-	14,263	허브정원2
	D-11	용산리 721-4	3,692	-	3,692	허브재배체험장
	D-12	용산리 772	2,469	-	2,778	녹지
E	소계		1,003	-	1,003	
	E-1	용산리 266-13	641	-	641	화장실1
	E-2	용산리 442-6	362	-	362	화장실2
F	소계		16,494	-	16,494	
	F-1	용산리 717-3	3,928	-	3,928	향기놀이터
	F-2	용산리 721-4	3,667	-	3,667	야외공연장2
	F-3	용산리 724-1	8,899	-	8,899	허브체험장2
G	소계		45,277	증) 1,508	46,785	
	G-1	용산리 442	11,083	-	11,083	중앙광장
	G-2	용산리 산6-2	3,286	-	3,286	허브체험장1
	G-3	용산리 442-3	2,705	-	2,705	야외공연장1
	G-4	용산리 442-3	1,439	증) 2,510	3,949	야영장
	G-5	용산리 442-5	1,800	-	1,800	풍속문화전시관
	G-6	용산리 442-3	1,500	감) 1,002	498	전망대
	G-7	용산리 442-4	23,464	-	23,464	에코어드벤처

## ○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A-1	· 15,427㎡ → 14,109㎡ (감 1,318㎡)	·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
A-2	· 15,431㎡ → 16,749㎡ (증 1,318㎡)	·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
D-6	· 16,497㎡ → 13,987㎡ (감 2,510㎡)	·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야영장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축소
D-8	· 17,198㎡ → 18,200㎡ (증 1,002㎡)	· 전망대부지 이전 및 면적 축소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증가
G-4	· 1,439㎡ → 3,949㎡ (증 2,510㎡)	· 야영장부지내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증가
G-6	· 1,500㎡ → 498㎡ (감 1,002㎡)	· 전망대부지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위치 조정 및 면적 축소

## 3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
A-1 허브 복합 토피 아관	용산리 266-14	용 도	허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목, 라목, 마목
			불허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
		용적률	· 100%이하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
A-2 아로마 테라 피관	용산리 266-12	용 도	허용 ·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~라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자목, 카목, 타목 중 안마시술소, 파목 제외)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(「관광진흥법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함)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(펜션에 한함)
			불허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60% 이하
		용적률	· 200% 이하
		높이	· 지상 4층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

도면 번호	위 치	구분	계 획 내 용	
A-3 관리동	용산리 446-3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		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
A-4 미니 동물원	용산리 423-10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		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	
A-5 라이더 관리소	용산리 423-10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	
E-1 화장실1	용산리 266-13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1층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	
E-2 화장실2	용산리 442-6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1층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	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
F-1 향기 놀이터	용산리 717-3	용 도	허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
			불허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
		용적률	· 100%이하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
F-2 야외 공연장2	용산리 721-4	용 도	허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
			불허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
		용적률	· 100%이하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	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
F-3 허브 체험장2	용산리 724-1	용 도	허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, 바목, 사목
			불허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
		용적률	· 100%이하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	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	
G-1 중앙 광장	용산리 442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		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
G-2 허브 체험장1	용산리 산6-2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, 바목, 사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	
G-3 야외 공연장1	용산리 442-3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색채	· 주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	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	
G-4 야영장	용산리 442-3	용도	기정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
			허용 변경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
			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2호 수련시설 중 라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
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		색채	· 구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
G-5 풍속 문화 전시관	용산리 442-5	용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색채	· 구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	
G-6 전망대	용산리 442-3	용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색채	· 구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		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	
G-7 에코 어드 벤처	용산리 442-4	용 도	허용	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
			불허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40%이하	
		용적률	· 100%이하	
		높이	· 지상 2층(지하 1층)	
		배치	·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,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	
		형태	·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·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	
		색채	· 구조색 :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· 보조색 :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	

#### 4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##### 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

-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당 2개 이하의 간판 설치를 원칙
- 가로형 간판중 가로폭의 80%이내,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하되 판류형은 제한하고, 양질의 자재로 마감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
- 돌출형 간판은 2층이상부터 설치하고,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.8m이내, 세로 크기는 1.0m 이내로 표시
-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접착성이 있는 비닐 또는 접착시트를 활용한 띠 형태로 한정하고, 전광류의 사용은 제한

나.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교통시설 : 도로(변경없음)

○ 도로 총괄표

유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
합계	4	1,241	9,293	-	-	-	3	968	7,739	1	273	1,554
소로	4	1,241	9,293	-	-	-	3	968	7,739	1	273	1,554

○ 도로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기점	종점				
기정	소로	2	601	8	국지 도로	660	중로3-344 용산리742-6	중로3-344 용산리742-2	일반 도로		2007. 1. 5.	
기정	소로	2	602	8	특수 도로	164	중로3-342 용산리756-2	소로2-601 용산리756-2	보행자 전용		2007. 1. 5.	
기정	소로	2	603	8	특수 도로	144	중로3-342 용산리265-1	소로2-601 용산리761-3	보행자 전용		2007. 1. 5.	
기정	소로	3	603	6	특수 도로	273	중로3-344 용산리742-4	소로2-601 용산리721-10	보행자 전용		2007. 1. 5.	

공간시설(변경없음)

○ 녹지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소계					3,047	-	3,047		
기정	342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42-3공 일원	571	-	571	2007.01.05.	
기정	343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42-5공 일원	554	-	554	2007.01.05.	
기정	344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42-7공 일원	906	-	906	2007.01.05.	
기정	345	녹지	완충녹지	운봉읍 용산리 758-2공 일원	1,016	-	1,016	2007.01.05.	

## 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번호		위치	획지			비고
	기정	변경		면적(m <sup>2</sup> )		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		28,772	-	28,772	
B	B-1	B-1	용산리 714-15장	3,166	-	3,166	
	B-2	B-2	용산리 714-10장	2,329	-	2,329	
	B-3	B-3	용산리 714-22답	1,387	-	1,387	
	B-4	B-4	용산리 717-29장	4,647	-	4,647	
	B-5	B-5	용산리 717-8장	4,565	-	4,565	
	B-6	B-6	용산리 717-11장	4,164	-	4,164	
	B-7	B-7	용산리 721-7장	4,330	-	4,330	
	B-8	B-8	용산리 721-8장	4,184	-	4,184	

## 3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
B-1 ~ B-8  허브 제품 가공 단지	용산리 일원	용도	허용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8호 창고시설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, 다목 중 목욕장 ·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
			불허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· 60%이하
		용적률	· 150%이하
		높이	· 지상 2층

※ B-1~B-8 까지의 허용용도 중 공장은 다음과 같다

1. 허브제품생산 및 가공공장으로 한정
2. 허브생산·가공제품 중 한국표준분류표 2433의 비누·세정·광택제·화장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공장은 허용
3. 부대시설 : 제품전시장 및 판매장, 원재료 등을 활용한 체험시설 등

※ 목욕장 : 허브원재료 및 생산품을 활용한 족욕카페, 체험스파 및 반신욕장 등

※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% 이내로 한정

## 남원시 공고 제2021 - 1017호

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7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된 근거 조항을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조항에 맞추어 정비

- 명칭 변경: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
나.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 (안 제4조제3호)

다.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5. 7. ~ 2021. 5. 26. (20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기획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의견 제출 사항**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**나. 의견 제출할 곳**

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획실

**다. 의견 제출 방법**

: 서면, 이메일(km25307@korea.kr), fax(063-620-6702) 및 직접방문 등

**5. 기타사항**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(☎063-620-60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6. 붙임 :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##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1. 05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기 획 실 장

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된 근거 조항을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조항에 맞추어 정비

- 명칭 변경: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
나.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 (안 제4조제3호)

다.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라.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(부칙 안 제2조)

- 「남원시 사립 박물관·미술관 진흥 조례」의 인용 조항 등 개정 반영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05. 07. ~ 2021. 05. 26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와 같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

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,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,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“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
2.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3.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)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학교의 교

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자치행정국장, 경제농정국장, 안전건설국장
2.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.

제8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2.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
3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
4.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5.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
6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
7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

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운용평가) 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기·대상·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·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남원시 사립 박물관·미술관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이하 “보조금 조례“라 한다) 제16조에 의하여 신청서”를 “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를 “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1년 5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**남원시장 귀하**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